

2020.7.13.~7.15./ 3일간

제32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

심사결과

의안명	심사결과
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장성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원안가결
장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	원안가결
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
주요 내용

1. 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0. 7. 6.
- 제안자 : 장성군수(기획실장)
- 제안이유
 -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과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(*법제처 규제개선 정비대상)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- 주요내용
 - 목적 내용 중 모호한 문구 정비(안 제1조)
 - 당연직 위원 정비(안 제2조 제3항)
 - (현행) 각 담당관과장 → (개정) 각 국장 및 실과장
 - 위원회 결정(자문, 심의, 연구, 의결) 사항 정비(안 제3조)
 - 위원회 회의개최 시기 조정(안 제4조 제1항)
 - (현행) 매주 월요일 개최 원칙 → (개정) 필요시 개최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2.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- 발의일자 : 2020. 7. 6.
- 발 의 자 : 장성군수(총무과장)
- 제안이유
 - 지방공무원법(지방공무원 복무규정)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업무생산성 증대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휴가 규정 신설과 모성보호·육아시간 사용 기준을 명시함.

- **주요내용**

- 포상휴가 규정 신설(안 제13조 제8항)

- 재해·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 포상휴가 부여

- 모성보호·육아시간 사용 기준 명시(안 제13조 제3항, 제4항)

- 모성보호·육아시간 사용 및 계산 방법 규정 명확화

- **의결결과 : 원안가결**

3. 장성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**제출일자 : 2020. 7. 6.**

- **제안자 : 장성군수(문화관광과장)**

- **제안이유**

- 우리군 필암서원을 비롯한 9개 서원이 2019년 7월 10일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
- 세계유산협약 및 세계유산위원회의 세계유산 등재 권고사항을 이행하고, 장성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재정하고자함.

- **주요내용**

- 목적(안 제1조)

- 세계유산 필암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,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

- 세계유산 보존관리(안 제3조)

-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
- 세계유산 보존·관리·활용 등에 관한 사항
- 세계유산 협의체 및 협력에 관한 사항

- 사업위탁(안 제4조)

-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·법인·단체

에 대한 사업의 위탁 근거 마련

○ 경비보조 및 지원(안 제5조)

-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

■ **의결결과** : 원안가결

4. 장성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

■ **제출일자** : 2020. 7. 6.

■ **제안자** : 장성군수(경제교통과장)

■ **제안이유**

○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·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■ **주요내용**

○ 목적, 용어 정의, 적용범위, 군수의 책무(안 제1조~제4조)

○ 일자리 창출 사업 등(안 제5조~제9조)

- 계획의 수립, 실태조사, 창출사업, 취업지원사업, 영향평가

○ 행정·재정지원 등(안 제10조~제16조)

- 실적보고, 검사·감독, 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등

○ 일자리 창출 위원회 등(안 제17조~제26조)

- 설치, 임기, 운영, 의견청취, 위원의 해촉, 수당 등

■ **의결결과** : 원안가결

5.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■ **제출일자** : 2020. 7. 6.

■ **제안자** : 장성군수(도시재생과장)

■ **제안이유**

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·군계획시설 결정·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지구단

위계획 주민 제안,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업무 관련 규제와 조례 운영 과정에서 발행한 미비점 및 보완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■ **주요내용**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
-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 정비
- 조례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
- 법제처에서 선정한 규제개선 사항 반영

■ **의결결과 : 원안가결**